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김영원 (한국의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제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중 간 갈등
2.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3.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5.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미국을 비롯한  
해양강국들은 협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공해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군사활동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연안국들은  
EEZ에서 연안국의  
안보를 해치는  
군사활동은  
금지된다고 주장*

##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중 간 갈등

- 미중 간 동아시아에서의 갈등 노정
  - 2001년 4월 중국 하이난 섬(해남도) 동남방향 70nm 지점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US EP-3E Aries II 미 정찰기와 이를 저지하는 F-8 중국 전투기 간 충돌 사건 발생<sup>1)</sup>
  - 2009년 3월 미국의 해양감시선 USNS Impeccable호가 중국 하이난 섬(해남도) 남방 75nm 수역에서 작전 수행 중 5대의 중국함정에 의해 포위되어 퇴거를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 함정은 일시 퇴거하였다가 익일 미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작전 계속 수행<sup>2)</sup>
  - 2014년 8월에는 하이난 섬(해남도) 동쪽 135nm 상공에서 일상적인 정찰 활동을 수행하던 미 해군 정찰기 U.S. Navy P-8가 중국 Su-27 전투기에 의해 비행 차단<sup>3)</sup>
  - 이외에도 중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과 상공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미 함정 또는 정찰기에 대한 방해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자주 발생
  -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활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간 갈등은 ‘EEZ에서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양강국과 연안국 간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제기
  -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은 EEZ 내에서 외국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나 상공비행의 자유 등은 보장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는 침묵
  - 미국을 비롯한 해양강국들은 협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공해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군사활동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연안국들은 EEZ에서 연안국의 안보를 해치는 군사활동은 금지된다고 주장
  -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은 협약 규정에 대한 문언적 해석, 교섭기록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목적과 대상에 대한 검토, 국제관습법, 각국의 실행들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 2.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 미국의 입장
  - 미국은 협약 및 국제관습법상 모든 국가는 타국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

-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들의 실행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은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협약이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제58조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타국의 EEZ에서 폭넓은 공해의 자유를 향유하며 군사활동은 적법한 공해의 자유 또는 해양이용의 자유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sup>4)</sup>
  - 특히 미국은 협약 제58조 제1항에서의 “다른 국제적으로 적법한 이용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목적으로 공해를 이용할 자유(the freedom to use the high seas for military purposes)”를 EEZ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의도로 포함되었다고 주장<sup>5)</sup>
  - 또한 미국은 비록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심해저를 제외한 다른 협약상 규정들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미국도 협약에 근거하여 타국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sup>6)</sup>
  - 한편 미 해군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군작전법에 관한 미 사령관의 핸드북(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에서 군함이나 군용기는 EEZ에서 공해에 적용되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와 그 밖의 이들 자유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의 이용(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
  - 미국은 상기한 입장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타국의 EEZ에서 일방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complete right to unilateral, unlimited naval operation)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계획(Freedom of Navigation Plan)’에 따라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하는 한편, 나아가 실제 군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재확인<sup>7)</sup>
  - 결국 미국의 태도는 연안국의 과도한 해양관할권 주장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첫째, 자원의 보존 등과 무관하게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영해 12nm를 초과하는 관할권 확대(안보수역 설정 등) 주장, 둘째, 협약 제5부(EEZ)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 셋째, 영해와 EEZ를 통과하는 군함 등에 대한 무해통항의 사전허가 또는 통고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차별적 조치 등을 과도한 주장으로 평가<sup>8)</sup>

**미국은  
타국의 EEZ에서  
일방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complete right to  
unilateral,  
unlimited naval  
operation)를  
일관되게 주장**

**중국은**

**자국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첫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둘째, 협약과 관련하여 채택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도 안 되며, 넷째, 평화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 ○ 중국의 입장

- 중국은 평화적 목적, 연안국법령 준수 등 협약 관련 조항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국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첫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둘째, 협약과 관련하여 채택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도 안 되며, 넷째, 평화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전술한 USNS Impeccable호의 행위는 권리의 남용으로 협약 제301조상의 평화적 목적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sup>9)</sup> 동 선박이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해양과학조사(MSR: Marine Scientific Research)라고 반박. 사실 타국의 EEZ에서의 MSR은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협약 제240조도 MSR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sup>10)</sup> 중국은 미국의 MSR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EEZ에서 행해졌으며 중국의 안보이익과 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sup>11)</sup>
- 한편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전술한 2001년 미중 간 군용기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 Li Oin이 기고한 “A Look at Plane Collision Incident From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바, 동인은 미 정찰기의 중국 EEZ 상공 비행은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동시에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따라서 중국의 EEZ에서의 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를 결여하였다고 주장<sup>12)</sup>

### 3.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가. 국제법적 검토

- EEZ는 협약 채택과정에서의 연안국과 해양강국 간 타협의 산물
  - EEZ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해양강국은 EEZ에서의 연안국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되 상부수역에 대해서는 공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타협안에 합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EEZ는 공해도 아니고 연안국의 주권에 속하지도 않는 독특한(sui generis) 새로운 제도(special legal regime)로 성립
  - 협약 제56조 제1항 (a)는 이를 구체화하여 연안국이 EEZ에서 경제적 이용(economic exploitation)을 위한 주권적 권리(sovrenign rights)를 향유한다고 규정, 또한 같은 항 (b)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관할권(jurisdiction)의 행사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 및

- 무생물 자원의 채취 또는 채굴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필요한 과학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연안국의 관할권을 규정. 동 규정은 결국 연안국에게 EEZ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하는 목적
- 한편 제58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EEZ에서 제87조에 규정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sup>13)</sup>고 규정
- 또한 동 조 제2항에서는 협약 제88조부터 115조에 이르는 공해와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규정<sup>14)</sup>
- 따라서 동 제58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타국도 EEZ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나 이용과정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할 것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협약의 태도

- 첫째, 협약 기초자들이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였다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시 군사활동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EEZ에서도 군사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그러나 포함 시키지 못한 이유는 해양강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에 강력 반대하였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이유로 해양강국의 주장대로 군사활동이 허용된다는 명시적 조항도 불포함
- 결국 협약은 EEZ가 결코 영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었으며 따라서 EEZ에서의 군사활동을 금지하려는 연안국의 시도는 자칫 EEZ를 영해화(territorializing)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우려

둘째, 협약은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침묵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58조를 통해 공해의 자유를 규정한 제87조를 EEZ에 적용하여 EEZ에 대한 공해 자유의 원칙을 확인

- 이를 통해 연안국과 해양강국 간 군사활동에 대한 묵시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EEZ는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과 무관한 군사활동 문제는 전통적인 공해 자유의 원칙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가능<sup>15)</sup>

셋째, EEZ에서 타국이 향유하는 자유를 규정한 협약 제87조 제1항도 “공해의 자유는 특히(inter alia)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항에 열거된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 등이 결코 망라적인 것이

**협약은 제58조를 통해 공해의 자유를 규정한 제87조를 EEZ에 적용하여 EEZ에 대한 공해 자유의 원칙을 확인**

**EEZ의 상공은  
공해 상공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역  
(international  
airspace)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에  
불복종**

아니라 예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 바, 다른 자유, 예컨대 군사활동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넷째, 이러한 사실은 유엔해양법협약 토의 당시 회의 의장이었던 싱가포르의 Tommy Koh의 다음 설명에서 이해 가능<sup>16)</sup>

- 동인은 협약이 군사활동 허용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섭하고 합의한 문안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양해사항(general understanding)이었다고 설명
- 나아가 ‘제3국은 브라질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브라질 대표의 발언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활발한 논의과정과 문안 채택배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

- EEZ의 상공은 공해 상공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역(international airspace)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에 불복종

첫째, 국제공역에서의 활동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에 의해 규율

- 동 협약 제1조도 유엔해양법협약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이 자국 영토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2조에서는 자국의 영토를 육지영토와 인접한 영해로 정의
- 또한 군사적 필요와 공공안전(military necessity and public safety)을 위하여 필요시 자국의 영토상공을 비행하는 타국 항공기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역은 제외<sup>17)</sup>

둘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 시 브라질 정부가 EEZ 상공을 자국의 국내공역(national airspace)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ICAO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는 EEZ가 상공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해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

- 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국제민간항공협약 모두 연안국에 대해 영해 이원의 국제공역에서 활동하는 군용기에 대한 어떠한 권한(authority)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기초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sup>18)</sup>

- 특히 연안국의 규제가 허용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평가

첫째, 중국은 연안국 규제의 근거로 무엇보다도 협약에 EEZ에서의 군사활동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국의 EEZ에서의 군사활동 수행 시 협약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고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제 58조 3항),<sup>19)</sup>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법의 일반원칙),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제 88조)<sup>20)</sup> 등을 지적

둘째,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음

- 연안국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 사용의 경우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duo regard)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 의무(duo diligence)를 가지고 행하는 군사활동의 경우까지 방해받거나 간섭받는 것은 부당<sup>21)</sup>
- 실제로 해양강국들은 군사활동이 적절한 고려(duo regard)를 가지고 행해지는 한, 연안국들의 심각한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다고 평가<sup>22)</sup>
- 협약이 명시적으로 군사활동을 금지 또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에서 연안국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협약 제58조 제3항의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언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협약 위반
- 다만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법령의 제정은 허용되겠으나 군사활동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제정은 불허
- 특히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에도 협약 제23조에 따라<sup>23)</sup> 국제법상 정해진 사전예방조치(precautionary measures)를 취할 경우 영해 내에서도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EZ에서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도 전 세계를 항행하는 미국의 핵 잠수함에 대한 묵인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군사활동과 환경 문제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가 아닌 한 단순한 환경보호를 이유로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
- 많이 인용되는 예로 EEZ에 타국 군함의 집결이 있을 경우 이는 권리의 남용(abuse of rights)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리의 남용은 해양강국보다는 연안국에 의해 자행되어져 왔으며, 실제로 연안국이 국제법상 근거가 불투명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군함의 집결이라는 단순한 사실 자체를 해양강국의 권리남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
- 또한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이 무엇인지 협약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말할 경우 우리는 전쟁(war) 또는 무력충돌(armed conflict)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군사활동을 전쟁과 유사한(war-like)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고, 나아가 국제관습법적으로 공해상에서는 군사활동과 훈련이 허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군사활동이 비평화적 목적(non-peaceful purpose)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제로 협약이 논의될 당시 만약 군사활동이 비평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미국과 당시의 소련 등 해양강국은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오늘날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주요국 간,  
특히 미중 간 입장  
차이와 이로 인한  
짚은 총돌은 결국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 결론적으로 군사활동이 비평화적 목적(non-peaceful purpose)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sup>24)</sup> 실제로 협약이 논의될 당시 만약 군사활동이 비평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미국과 당시의 소련 등 해양강국은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가능

#### 나. 국가실행: 연안국에 의한 군사활동의 제한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가 간 국제법적 해석의 불일치
  - 오늘날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주요국 간, 특히 미중 간 입장차이와 이로 인한 짚은 총돌은 결국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수면위로 부상되게 될 것으로 전망
- 약 30개 연안국들이 자국의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제한 부과
  - 현재 중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브라질, 미얀마, 카보베르데,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태국, 우루과이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sup>25)</sup> 페루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12nm을 초과하여 200nm의 영해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활동을 규제.<sup>26)</sup> 나아가 캄보디아, 중국, 수단, 시리아 및 베트남 등은 24nm 접속수역을 선포하고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시행<sup>27)</sup>
  - 이들 국가들의 주장은 영해의 확장을 통한 주권의 확대, 포괄적인 형태의 관할권의 확대, EEZ에서의 해양의 자유보다는 협약에 규정된 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강조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sup>28)</sup> 규제 및 제한 형식은 우려 표명, 통고요구, 군사수역의 설정 및 사전 승인 등으로 구분<sup>29)</sup>
  - 특히 이들 연안국 중 중국, 북한과 페루가 자국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국과 북한은 실제 적극적으로 자국법의 집행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필요시 무력의 사용도 불배제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의 EEZ 또는 동 상공에서 활동하는 미 군함이나 군용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 예컨대, 전술한 미중 간 갈등 외에도 2001년 3월 중국 함대는 황해(서해) 내 중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에서 일상적으로 군사적 목적의 수로 측량을 하던 미 해군선 USNS Bowditch호에 대해 위협적인 방식으로 퇴거를 요구.<sup>30)</sup> 그 밖에 전술한 USNS Impeccable호 사건, USNS Victorious호 사건,<sup>31)</sup> 2011년 6월 타이완 해협 상공에서의 U-2기 사건, 2014년 8월 미해군 P-8 정찰기 사건 등 다수

- 북한은 1968년 1월 5개의 군함이 미 첩보함 USS Pueblo호를 북한 요도섬 15.8nm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북한으로 예인한 바 있으며,<sup>32)</sup> 이후 북한은 황해에서 자신의 EEZ 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dary Zone)으로 설정. 매우 광범위한 수역에 대하여 불법적인 주장 유지(이에 대해서는 후술)
  - 한편 페루 전투기는 1992년 4월 페루 영해 이원 국제상공에서 마약 관련 정찰활동을 수행 중인 미 정찰기 US C-130을 공격, 이로 인해 동 정찰기는 에콰도르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페루의 Talara라는 좁은 활주로에 비상착륙. 페루 정부는 미 정찰기가 페루 전투기의 교신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sup>33)</sup>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며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
- 상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국내법령의 제정을 통해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동 법령의 집행에 반드시 적극적이지는 않으며 또한 제한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소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참고로 최근 10여 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통과하였으나<sup>34)</sup> 동 항공기가 이들 연안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주요국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sup>35)</sup>

#### 다. 평가

- 협약은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이 허용되는지에 침묵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EEZ의 상부수역과 상공이 영해와 영공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협약의 문언과 정신에 부합
  -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sup>36)</sup> 또한 국가실행 면에서 볼 때도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임을 확인 가능
- 한편 해양굴기를 추구해오고 있는 중국 자신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중국은 자신의 해양력 증대를 통해 현재 해양과학조사와 군사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해 미국, 베트남, 필리핀과 일본 등의 EEZ에서 아무런 통고나 허가 없이 군사활동을 수행 중<sup>37)</sup>

*최근 10여 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을 통과하였으나  
동 항공기가 이들  
연안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용*

**EEZ에서의 군사활동  
허용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우리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실제로 2014년 7월 중국의 정보수집함정이 미국의 EEZ에서 RIMPAC 기간 동안 USS Ronald Reagan Strike Group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관측.<sup>38)</sup> 이러한 은밀한 행동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영토 부근 상공에서 SRO(Sensitive Reconnaissance Operations) 비행을 멈출 것을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감시활동은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sup>39)</sup>
-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중국의 태도는 2013년 싱가포르 개최 Shangri La Dialogue에서의 중국인민해방군 장교의 발언에서도 확인.<sup>40)</sup> 동인은 중국이 미국의 EEZ로 선박과 항공기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이는 분명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미국은 미국의 EEZ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합법적(lawful)인 것으로 간주
  - 2013년 의회에 보낸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미국방부는 중국의 군사활동이 괌과 하와이 주변 수역에서 과거 수년간 행해진 것이 관측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활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는 바,<sup>41)</sup> 이는 결국 중국의 모순된 입장에 대한 지적
  - 그러나 중국의 애매한 입장과 이러한 이중잣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

## 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 EEZ에서의 군사활동 허용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우리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협약은 군사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배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미 적용배제를 선언한 바 있고<sup>42)</sup> 더욱이 미국의 경우 아직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약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사실상 배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평화적 해결방식의 원용 필요성 제기
  -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외교교섭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은 결코 zero-sum game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흑해에서의 영해의 무해통항과 관련된 1988년 미소 간 “Black Sea Bumping” 사건은 미소 간 공동선언(Joint Statement)이라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던 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무해통항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칙의 통일적 해석(Unilateral Interpret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Innocent Passage)”을 통해 양측은 영해에서 사전통고나

- 허가 없이 무해통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sup>43)</sup>
- 이 방식은 아직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으로 협약상 규정된 분쟁해결방식을 원용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예로서 법외적인 고려가 수반되고 사법적 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다시 말해서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법이전의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
- 이를 위해 협약의 문언과 정신을 토대로 미중 간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동 규범의 내용은 EEZ 이용에 대한 연안국의 적절한 고려 의무,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의 삼가, 상호간 신의성실에 따른 협력 등 포함 가능

## 4. 우리나라에 대한 합의

### 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태도

- 미국은 황해상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신중한 입장
  -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2010년 11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항공모함을 황해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황해에서의 훈련은 보류하고 대신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 형성
  - 그러나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은 황해에 USS George Washington(CVN 73)호를 파견하여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참가시킬 계획을 발표<sup>44)</sup>
  - 2010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중국 정부는 황해에서의 일련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George Washington 호가 황해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sup>45)</sup>
- 중국의 지속적 반대입장은 우리의 안보이익 저해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 및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발언이나,<sup>46)</sup> “미국의 항공모함이 황해로 들어올 경우 실탄 사격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러위안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회장의 극단적인 발언은 한미 간 황해에서의 군사활동을 저해할 우려

*2010년 11월  
미국 정부는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황해에서의 훈련은  
보류하고 대신  
동해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어도가 한중 간  
합의과정에서  
우리의 EEZ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주목 필요**

- 중국은 황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및 주변수역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에 도전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 현대화는 군사위기 시 미국의 동 지역에서의 접근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유사시 황해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sup>47)</sup>

#### 나. 중국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군사훈련 가능성

- 중국의 황해에서의 군사훈련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 반영
  - 중국은 2005년 러시아와 함께 동해안의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서해안의 산둥성 칭다오 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륙훈련 및 첨단 미사일 발사훈련을 포함하는 합동군사훈련 실시. 한국과 마주보고 있는 칭다오에서의 지상 상륙훈련까지 실시하는 중국이 한미 간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이중성 의미,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부정적 요소
- 한중 간 황해에서의 EEZ 경계획정과 중국의 황해에서의 군사활동의 합의
  - 황해에서의 가상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우리측 수역 중 이미 우리의 EEZ로 확정된 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대해 중국이 아직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수역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반대하면서 동시에 중국 자신의 군사훈련은 정당화시킬 가능성 불배제
  - 이러한 태도는 EEZ 경계획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해 전체를 마치 중국의 EEZ로 간주하는 모양새로 이와 같은 논란은 한중 간에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이 확실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sup>48)</sup>
- 이어도의 전략적 중요성
  -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어도<sup>49)</sup>가 한중 간 합의과정에서 우리의 EEZ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주목 필요
  - 다만 이어도가 양국 간 가상 중간선의 우리측 수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역임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국제법상 반드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아직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도가 중국 해안으로부터도 200n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안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따라서 중국이 실제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순찰임무를 수행할 경우 우리도 가상 중간선을 넘어 중국 측 수역에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적극 고려 필요<sup>50)</sup>

- 이와 관련 2017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특별재판부가 판결한 가나-코트디부아르 경계획정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짐<sup>51)</sup>

#### 다. 북한의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dary Zone)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
  - 일부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국 영해 및 영해 이원에 군사적 목적의 군사경계수역을 설정.<sup>52)</sup> 군사경계수역의 명칭이나 범위도 다양. 그러나 이러한 군사경계수역은 협약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중에서도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
  - 1977년 7월 북한은 200nm 경제수역 도입을 발표. 이어서 8월 1일 동해와 황해에서의 광범위한 수역에 대해 영해기선(북한이 주장하는 영해기선은 동해 수역에서 최장의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의문시)에서부터 50nm까지의 수역을, 황해에서는 북한의 경제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으로 선포<sup>53)</sup>
  - 황해는 폭이 좁으므로 북한과 중국은 중간선을 따라 경제수역을 나눠야 하며, 따라서 황해에서 북한이 차지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넓지 않았으므로 북한은 황해 경제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으로 발표<sup>54)</sup>
- 북한은 군사경계수역이 북한의 국익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주장
  - 외국 군함과 군용기는 북한의 군사경계수역과 상공에의 출입이 금지. 민간 선박(어선은 제외)과 항공기의 경우 사전 합의 또는 승인을 전제로 동 수역과 상공에의 출입이 허용되지만 동 선박이나 항공기는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나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예컨대 사진 촬영이나 해양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도 철저히 금지
  - 그러나 일반국제법상 영해에서도 민간선박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는 바 영해를 확장한 동 수역을 내수로 간주하고 동 수역에서의 타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당연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욱이 민간선박의 활동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도 자신들이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 수역에 대한 모든 선박의 출입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간주<sup>55)</sup>
  - 또한 동 수역에서 어선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선의 활동은 북한의 경제수역 선언(북한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행위 및 해수 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

**북한의****군사경계수역은****군사수역 본연의****목적인 안보를 넘어****타국의 정당한****이용권을 자의적으로****제한하는 위법한 주장**

인명과 자원에 유해한 모든 행위를 금한다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 어선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sup>56)</sup> 정당성이 의문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선포 의도는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선포 의도를 분석해 보면, 첫째, 북한은 동 수역의 선포를 통해 안보성역을 확보하고, 둘째, 타국, 특히 미국과 한국의 정보수집활동을 방해하며, 셋째, 황해 5도와 북한 연안 사이에 어어진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며, 끝으로 북한은 한미 양국군의 군사경계수역 침범을 이유로 무력도발을 정당화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sup>57)</sup>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협약이 규정하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은 물론 상부수역이 공해의 지위를 가지는 EEZ에서의 항행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수역 본연의 목적인 안보를 넘어 타국의 정당한 이용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주장
  - 특히 북한은 동 수역의 설정을 통해 사전통보와 승인절차 없이 통항하는 군함의 경우 적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역의 설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국, 일본 및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 결론적으로 북한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설정한 군사경계수역에 포함된 수역과 상공을 내수와 내수 위의 상공으로 간주.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영해와 접속수역), 제3부(배타적경제수역) 및 제7부(공해), 시카고 협약 제1조-3조 및 제9조의 문언과 정신에 위배<sup>58)</sup>
- 북한의 부당한 태도 변화 촉구
  - 북한은 협약의 문언과 정신에 따라 군사경계수역을 철폐하고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 영해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한 무력훈련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구

## 5.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 연안국에 의한 EEZ에서의 군사활동 규제
  - 연안국에 의한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이러한 입장이 보편화되는 경우 지금까지 공해로 간주되었던 해양의 38%가 연안국의 규제와 관할권에 귀속

- 이 경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태지역에서 연안국들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황해에서 외국 군함의 접근을 부인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협약 및 국제관습법 위반
- 협약은 EEZ 제도 출범 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의 지위 인정
  - 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EEZ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 부과는 부당
-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과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제기
  - 중국의 EEZ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sup>59)</sup>
-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미중 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해 필요
  -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
  -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동-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의 적극 모색이 필요
- 동 사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
  -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제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 강화도 필요**

- 따라서 우리로서는 협약의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 대해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필요<sup>60)</sup>
-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 강화도 필요

**주석**

- 1) Indira A.R. Lakshmanan, *Some See Double Standard in China Flap*, BOSTON GLOBE, 2001.4.18, p.A1.
- 2) C. Rahman and M. Tsamenyi, *A Strategic Perspective on Security and Naval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41(2010).
- 3) Robert Burns and Lolita C. Baldor, *Pentagon Cites "Dangerous" Chinese Jet Intercept*, The Associated Press, 2014.8.22.
- 4) All States continue to enjoy in the [EEZ] traditional high seas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the ...the right to conduct such activities will continue to be enjoyed by all Stat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is is the import of Article 58 of the Convention(17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PLENARY MEETINGS, OFFICIAL RECORDS, U.N. Doc. A/CONF.62/WS/37 and ADD.1-2, 244(1973-1982); 협약 제58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 참조.
- 5) Robert Beckma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Legal Issues*, RSIS-OPRF International Conference, 2012.2. 29-29, Maritime Mandarin Security Environment of the Seas in East Asia, CIL,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6) *U.S. Oceans Policy; Statement by the President*, 1983.5.10, 19 WEEKLY COMP. PREs. DOC. 384, 1983.
- 7) 과거 1988년 흑해에서의 미소함정 간 충돌사건, 1986년 Sidra만에서의 미 해군의 리비아 군용기 격추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8)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and Scientific Affairs, US. DEPT. OF STATE, *Limits in the Seas*, No.112, United States Response to Excessive National Maritime Claims 37, 1992.
- 9) 협약 제301조(해양의 평화적 이용):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 10) 협약 제240조(해양과학조사의 일반원칙);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있어서 다음 원

칙을 적용한다.

(a) 해양과학조사는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한다.

- 11) Major Chuah Meng Soon, *Restrictions on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jor Powers' 'Lawfare,'* Pointer, Journal of the Singapore Armed Forces (2016), p.18.
- 12) George V. Galdorisi, Alan G. Kaufma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Preventing Uncertainty and Defusing Conflict*, p.41에서 재인용.
- 13) Raul (Pete) Pedrozo,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ast Asia Focus," *International Law Studies*, U.S. Naval War College, Vol.90(2014), p.517, 원문 인용: "These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s' may be undertaken without coastal State notice or consent and include a broad range of military activities such a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operations; military marine data collection and naval oceanographic surveys; war games and military exercises; bunkering and underway replenishment; testing and use of weapons; aircraft carrier flight operations and submarine operations; acoustic and sonar operations; naval control and protection of shipping;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military-related artificial installations; ballistic missile defense operations and ballistic missile test support;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e.g., visit, board, search and seizure); conventional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belligerent rights in naval warfare (e.g., right of visit and search); strategic arms control verification;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e.g., counter-terrorism and counter-proliferation); and sea control."
- 14) Ibid.
- 15) Raul (Pete) Pedrozo, *Responding to Ms. Zhang's Talking Points on the EEZ*,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pp.207-223.
- 16) Tommy T. B. Koh, Remarks on the Legal Statu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Freedom of Seas, Passage Rights and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53 (Myron H. Nordquist, Tommy T.B. Koh & John Norton Moore, eds., 2009): "...some coastal states would like the status of the EEZ to approximate the legal status of the territorial seas. Many other states held the view that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s and EEZ are limited to the exploitation of living and non-living resources and that the water column should be treated much like the high seas."
- 17)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15 U.N.T.S. 295, 1944.12.7.
- 18) Barbara Kwiatkowska, *The 200 Miles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ew Law of the Sea* (Brill Nijhoff, 1989), p.203.
- 19) 협약 제58조 제3항: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 부의 규정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
- 20) 협약 제88조(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공해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보존된다."

- 21) Beckman, supra note 5, 일부 국가들은 연안국이 생물자원, 해양환경에 손해를 끼치거나 연안 구조물, 항행안전 또는 과학조사행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활동에는 반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2) Major Chuah Meng Soon, supra note 11, p.16.
- 23) 협약 제23조(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또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한다.”
- 24) Major Chuah Meng Soon, supra note 11, p.17.
- 25) Raul (Pete) Pedrozo, supra note 13, p.521.
- 26) Ibid.: 베냉, 콩고, 에콰도르, 라이베리아, 페루, 소말리아, 토고가 이에 해당된다.
- 27) US Department of Defense, *Maritime Claims Reference Manual (MCRM)*,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2005. 1-M, 2008.6.23.
- 28) Robert Nadels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tate Claims and the LOS Convention*, Marine Policy, Vol.16, 1990.12월, p.483.
- 29) Major Chuah Meng Soon, supra note 12, p.14.
- 30) Raul Pedrozo, supra note 13.
- 31) James Kraska & Raul Pedrozo,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Law* (Brill Nijhoff, 2013), p.311.
- 32) [http://www.usspueblo.org/Pueblo\\_Incident/January\\_23.html](http://www.usspueblo.org/Pueblo_Incident/January_23.html)
- 33) *New York Times*, 1992.4.27.
- 34) Bill Gertz, *Russian Bombers Fly Within 50 Miles of California Coast, U.S. F-22, F-15 Jets Intercept Four Bear H bombers near Alaska, Northern California*, The Washington Free Beacon, 2014.6.11.
- 35) Rowan Scarborough, *Russian Flights Smack of Cold War*, The Washington Times, 2008.6.26.
- 36) Chung, Sam-Ma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in East Asia: Feasibilities and Limits*. [http://file.kims.or.kr/pdf/ASIANSIL%20PPT-DR\\_CHUNG.pdf](http://file.kims.or.kr/pdf/ASIANSIL%20PPT-DR_CHUNG.pdf) 참조.
- 37) Raul (Pete) Pedrozo, *Preserving Navigational Rights and Freedoms: The Right to Conduct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Exclusive Economic Zone*, 9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2010), pp.16-18.
- 38) Zachary Keck, *China is Spying on RIMPAC*, The Diplomat, 2014.7.20, <http://thediplomat.com/2014/07/china-is-spying-on-rimpac/>
- 39) Sophie Brown, *Stop Spy Flights, China Warns the U.S.*, CNN, 2014.8.29, <http://www.cnn.com/2014/08/29/world/asia/china-us-spy-flights/>
- 40) Rory Medcalf, *Maritime Game-Changer Revealed at Shangri-La Dialogue*, The Diplomat, 2013.6.2.
- 4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11월,

p.39.

- 42) 중국 정부는 2006.8.25 협약 제298조에 따른 선언서 기탁.
- 43)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ith Attached Uniform Interpret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Innocent Passage, 1989.9.23, reprinted in ANNOTATED SUPPLEMENT TO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NWP 1-14M/MCWP5-2.1/COMDTPUB 5800.1), 2-47, Annex A2-2.
- 44) *U.S. Carrier Strike Group Embarks for the Yellow Sea*, 2010.11.24 Stratfor World View.
- 45) James Kraska & Raul Pedrozo, *supra* note 31.
- 46) “중국의 군사훈련 ‘이중жат대’,” 『한국경제』, 2010.7.12.
- 47) Peter A. Dutto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A U.S.-China Dialogue o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Maritime Commons*, Naval War College China Maritime Study 7,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CMSI), 2010.12월.
- 48) 구민교,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권 2호(2011 여름), pp.1-36 참조.
- 49) 첫째, 지리적으로 이어도는 한국 영토인 마라도로부터 약 149km(80nm), 중국 영토인 퉁다오(童島)로부터 약 247km(133n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이어도는 해수면 아래 약 4~5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혹 파도가 심할 경우 이어도 정봉이 1년에 몇 차례 수면위로 노출된다. 셋째, 이어도에는 2003년 6월 11일 준공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립되어 있다.
- 50)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가상 중간선 이원의 중국 측 수역에서 범집행을 하는 경우 국내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51) ITLOS, List of Cases: No.23,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Cote D’ivoire in the Atlantic Ocean, Judgment, [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cases/case\\_no.23\\_merits/C23\\_Judgment\\_23.09.2017\\_corr.pdf](h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cases/case_no.23_merits/C23_Judgment_23.09.2017_corr.pdf)
- 52) “북의 욕심, 남의 조심, NLL은 불안하다,” 「이정훈의 안보마당」(2013), <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2018>: 군사경제수역(이하 군사수역)은 나라에 따라 방위수역이나 안보수역 또는 군사수역이라고 하는데, 방글라데시와 이집트, 파키스탄, 수단, 베트남 등 16개국이 15에서 100nm 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군사수역은 그 성격이 영해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
- 53) 박영수·정명선·방영애, 『국제법 및 해운법 참고서(법학부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p.4; 김찬규·이규창 저, 『북한 국제법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09)에서 재인용.
- 54) 「이정훈의 안보마당」, *supra* note 52.
- 55) 김찬규·이규창, *supra* note 53, p.266.

- 56) Ibid.
- 57) Ibid.
- 58) Raul (Pete) Pedrozo, *supra* note 13, p.540.
- 59) Peter A. Dutton, *supra* note 47: “we should all be grateful, since the ongoing friction and occasional incidents, tense as they are, are managed and contained by this resort to law rather than to force. It is important to observe that despite tension in military-to-military relations, the overall bilateral relationship remains one of productive strategic engagement, even if strategic cooperation is not entirely achieved. Thus, the dispute about U.S. military operations in China’s near seas has not hampered overall bilateral economic, commercial, diplomatic, or even military cooperation.”
- 60) Silvia Menegazzi, *Military Exercis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The Chinese Perspectiv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Law Journal*, 2015: “... political dialogues—through diplomatic channels, such as Track-II Diplomacy and think tank symposiums—might provide concrete measures in order to fill the gap left by the UNCLOS with regards to security and military interests and activities in the EEZ.”

#### 참고문헌

- Barbara Kwiatkowska. *The 200 Miles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ew Law of the Sea*. Brill Nijhoff, 1989.
- C. Rahman, and M. Tsamenyi. *A Strategic Perspective on Security and Naval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41 (2010).
- James Kraska, & Raul Pedrozo.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Law*. Brill Nijhoff, 2013.
- Major Chuah Meng Soon. *Restrictions on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jor Powers’ Lawfare*. *Pointer, Journal of the Singapore Armed forces*, 2016.
- Peter A. Dutto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EZ: A U.S.-China Dialogue on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Maritime Commons*. *Naval War College China Maritime Study 7*, China Maritime Studies Institute (CMSI), 2010.12월.
- Raul (Pete) Pedrozo. *Preserving Navigational Rights and Freedoms: The Right to Conduct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Exclusive Economic Zone*, 9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2010).
- \_\_\_\_\_. *Responding to Ms. Zhang’s Talking Points on the EEZ*.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
- \_\_\_\_\_.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ast Asia Focus*, *International Law Studies*, U.S. Naval War College, Vol.90(2014).
- Silvia Menegazzi. *Military Exercis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The Chinese Perspectiv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Law Journal*, 2015.

## ❖ 저자 약력

## ■ 김영원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초빙교수. 국제법(해양, 무력사용)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취득. 주 네덜란드 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외교부 한일청구권 협정 전담대사를 역임. 주요저서로는 『현대국제법』(공저, 2000), *Dokdo Issue: A Korean Perspective* (미국 Georgetown 대학교 발간, 2006)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제법상 예방적자위권에 관한 연구”(1994)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